

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  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옥재은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최근 「주택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울공공주택 중 ‘소형 임대주택’의 정의를 재정비하고,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우선 「주택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인해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이 개편됨에 따라, 소형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정의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내용상 종전과 동일한 정의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또한, 임대주택 용적률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던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, 그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.

○ 기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 
부탁드립니다.

○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